

임원복무규정

임원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임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직위해제) ① 임원의 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 ② 직위해제된 임원은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 ③ 임원의 임면권자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별표의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란 다음에 9. 정치운동 금지위반란,
 10. 집단행위 금지위반란, 11.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정치운동 금지위반	해임	해임	경고	주의
10. 집단행위 금지위반	해임	해임	경고	주의
11.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 된 경우	해임	해임	경고	주의

부 칙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0조의2(직위해제) ① 임원의</u> <u>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경우에는 이사회</u>의 심의·의결 <u>을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않</u> <u>을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u> <u>2.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u> <u>족한 경우</u> <u>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다</u> <u>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u> <u>제외한다)</u> <u>4.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u> <u>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u> <u>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u> <u>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 비</u> <u>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u> <u>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u> <u>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u>

② 직위해제된 임원은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③ 임원의 임면권자는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구별표대비표

(현 행)

[별표]

임원문책 양정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의무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타	해 임 해 임	해임, 경고 경 고	경 고 주 의	주 의 주 의
2. 복종의무위반	해 임	경 고	주 의	주 의
3. 직장이탈금지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5. 비밀엄수의무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6. 청렴의무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 임	해 임	주 의	주 의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신 설>				
<신 설>				
<신 설>				

(개 정 안)

[별표]

임원문책 양정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 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 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u>정치운동금지위반</u>	<u>해 임</u>	<u>해 임</u>	<u>경 고</u>	<u>주 의</u>
10. <u>집단행위금지위반</u>	<u>해 임</u>	<u>해 임</u>	<u>경 고</u>	<u>주 의</u>
11. <u>채용비리와 관련 하여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u>	<u>해 임</u>	<u>해 임</u>	<u>경 고</u>	<u>주 의</u>